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편집 및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교책연구소인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본 연구원의 학술지 명칭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로 한다.

제3조(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4조(위원회)

(1)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분과 및 전공별로 책임자를 추천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2)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3) (소집) 편집위원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의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의 소집요청에 의해 편집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서면과 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4)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의 발간과 관련한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결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따른 심의 판정, 최종수록논문의 결정과 기타의 기획, 편집, 출판, 배포 등의 제반 업무를 집행, 관리한다.

제5조(학술지 편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지에는 원불교, 한국종교 및 종교문화일반에 관한 미발표 연구 논문을 주로 게재한다.

제6조(발행회수 및 발행예정일)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지는 년4회 발행한다(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제7조(논문의 투고)

(1)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지 게재원고 <논문 투고 및 작성 요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wth.jams.or.kr>)에 투고한다.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주제는 원불교, 한국종교 및 종교문화일반에 관한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3) 원고에는 600자 내외의 ‘국문요약’과 5개 이상의 핵심주제어를 제시하고 이를 번역한 ‘영문초록(Abstract)’ 및 ‘핵심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투고 요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 선정)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또는 원고의 심사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문별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원고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주제의식의 창의성

(2) 논거의 타당성

(3) 기술의 논리적 일관성

- (4) 근거자료의 정확성
- (5) 선행연구의 이해
- (6) 유용성 및 기여도

제10조(심사절차 및 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한다.
- (2)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후 게재를 허락한다.
- (3)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이 1명이고, 1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보고서(익명)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원의 위원회에서 게재여부 판단한다.
- (4)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해당 심사보고서(익명)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회의 및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투고 및 게재료)

- (1)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고료를 받는다. 단, 고료 가운데 세금 및 게재에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 (2)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투고료 지급과 관련한 제반 사무적 사항을 협조한다. (주소, 온라인계좌번호, 영수증 서명날인 등)

제2조(투고요령)

- (1) 논문 작성 순서는 제목, 요약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 순으로 한다. 이때 저자를 유추할 수 있는 ‘졸고’, ‘졸저’ 등의 표현은 하지 않는다.
-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제3조(투고자의 준수사항)

- (1) 모든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 <KCI문헌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에 게재되는 논문은 홈페이지, KCI에 원문이 무료로 게시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 (1) 본 규정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